

G-Welfare Weekly Report

01

중앙정부 정책동향

1. 대선주자들 복지공약, 절반의 지지

01 주요 내용

-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표심을 잡기위한 대선주자들이 복지공약*을 쏟아내고 있어 그 내용과 여론조사 결과**를 중심으로 정리함
 - 대표적인 복지공약은 기본소득이며, 그 외 저출산 해소, 일-가정양립을 위한 공약, 청년 일자리 공약 등이 포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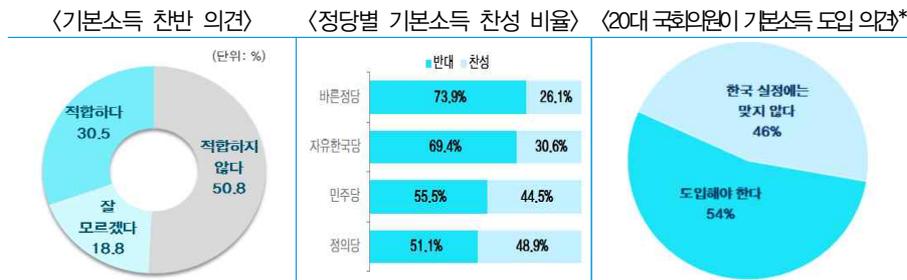
*이투데이 뉴스 대 선공약 뉴스라이즈
** MK뉴스 (2017.02.21.). 대 선주자 공약 집중 분석 전국민에 나 랫돈 주는 기본소 득제 20대만 찬성

분야	주요 내용
기본 소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문재인)기초연금 70세 20만원, 89세 30만원으로 상향. 미취업 청년에 청년수당 월 30만원, 아동수당 첫째아이 월 10만원, 둘째·셋째는 월 2~3만원 추가 지원 · (안희정) '국민은 공짜 밥을 원하지 않는다'. 노인, 아동, 장애인, 여성 등 약자 우선 복지 추진 등 복지제도의 방향부터 논의 · (이재명) 아동배당(1~12세), 청소년배당(13~18세), 청년배당(19~29세), 장애인·농민(특수배당), 65세 이상(노인배당) 연 100만원 지급, 전국민 상품권 30만원 지급 · (안철수) 기본소득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포퓰리즘적인 발상.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월 20만원씩 지급 · (심상정) 아동·청년·농민·노인 등에게 월 20~30만원 기본소득 도입(사회복지세 신설)
저출산 해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문재인) 맞벌이 부모 10~16시 근무 및 유연근무제. 출산부터 보육까지 국가 지원, 셋째 자녀부터 대학등록금 지원,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보육시설 확충 · (안희정)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기준 강화(남녀 불문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설치)로 전체 아동의 10%까지 직장어린이집 보육. 초과보육금지교사 1인당 아동 수 축소 · (이재명) 아동배당(1~12세) 연 100만원 지급 · (안철수)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. 육아휴직 기간 확대.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 · (유승민) 육아휴직 3년법(민간기업에도 자녀 한명당 육아휴직 3년까지 보장) · (심상정) 슈퍼우먼방지법 (부부 출산휴가 1개월 의무제, 부모 육아육직 의무 할당제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최대 3년까지 분할 사용)
칼퇴근 공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문재인) 법정노동시간 준수(52시간=소정근로시간 40시간+연장근로 12시간). 2인 2교대제→ 3조 3교대제 · (안희정) 법정 노동시간 준수.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조정 · (이재명) 52시간 이외의 초과근무 법적 금지. 초과노동수단 1.5배 현재 1000여명 수준의 노동경찰(근로감독관)을 최대 1만명 확대하여 근로환경 개선 · (안철수) 임금하락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전제. 근로시간 단축. 최저임금 평균임금의 50% · (유승민) 칼퇴근 보장. 돌발노동 금지. 근로사이 최소휴식시간 보장. 비정규직 총량 제한 · (남경필) 주 40시간. 연장노동 포함 주 52시간 제도 확립. 아근없는 날 확대
청년 일자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문재인)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, 노동시간 단축으로 50만개 등 총 131만개 일자리 창출. 공정임금제(중소기업 임금수준 대기업의 80%). 비정규직 축소. 일자리위원회 신설 · (안희정) 경제민주화 공약. 기업 신규투자 촉진. 사업구조 개편으로 일자리 질 강화 · (이재명) 근로시간 준수.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근로환경 정상화로 일자리 269만개 창출 · (안철수)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혁명으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· (유승민) 고시촌을 실리곤밸리로 청년 창업 지원 · (남경필) 테크로밸리 10개 유치. 권역별 특화 개발

- 복지 영역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기본소득제에 대해 '50.8%'가 부적합하다고 하여 '일하지 않아도 나라가 누구에게나 돈을 준다'는 보편적 복지에 대해 부정적

조사일시 : 2017년 2월 17일 ~ 18일 (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,000명)
 표본오차 : 95% 신뢰수준에서 ±3.1%p.
 조사방법 : 구조화 설문지로 전화면접조사 방식 및 유·무선 RDD활용 (유선 60% + 무선 40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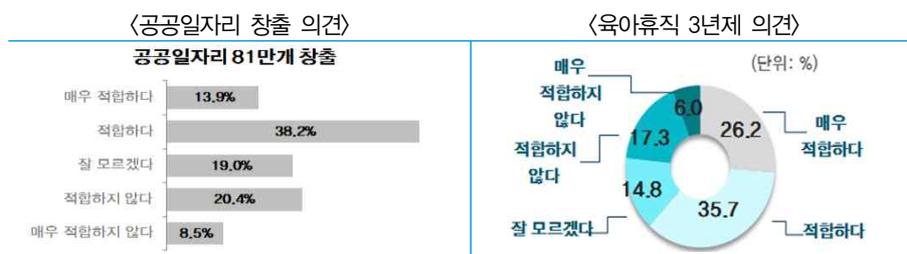
- 연령별로는 고연령층의 반대가 심하여 55-59세 중 72% 부정적인 반면, 20대만 찬성 비율 높음
- 각 주자들이 제시하는 기본소득은 특정연령과 계층을 한정한다는 점에서 본래 의미의 기본소득제라고 보기 힘들며, 기본소득개념의 공약(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)을 제시하고도 기본소득은 반대하는 등 기본소득에 대한 명확한 이해나 개념 정립이 안된 것으로 판단
- 또한 지난 해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찬성이 54%로 이번 여론조사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시간이 흐를수록 기본소득을 위한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가 더 크게 작용



자료(좌, 가운데) : MK뉴스(2017.02.21.), 대선주자 공약 집중분석. 자료(우) : 조선비즈(2016. 9.21.) 핫이슈기본소득

*조선비즈가 기본소득과 관련성이 높은 이재위, 복지위, 환노위 등 3개 상임위 소속 의원 3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함

-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육아휴직 3년제는 찬성 비율이 각각 52%와 61.9%로 우호적이며, 연령별로는 20대의 찬성이 가장 높아 취업에 대한 청년의 절박함을 확인할 수 있음
-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81만개에 대해 매우 적합(13.9%), 적합(38.2%) 등 찬성 의견이 52%이고, 연령대별로는 19~29세 찬성률이 62.9%로 가장 높게 나타남
-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는 세금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추후 재정부담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정교한 정책 설계 보완이 필요
- 육아휴직을 기존 1년에서 3년까지 3회에 걸쳐 사용하도록 하는 공약에 61.9% 찬성하였고, 연령별로는 육아휴직 당사자인 20대와 30대의 찬성비율이 각각 80.8%, 70.2%로 가장 높음



자료 : MK뉴스(2017.02.21.), 대선주자 공약 집중분석.

02 시사점

- 최근의 저성장 추세와 자동화·로봇·인공지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가 현실화되면서, 소득불평등 해소 방안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는 만큼 우리 상황에 맞는 개념 및 전략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
-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가 큰 사업인 만큼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후 성과 입증을 통해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거치는 것도 한 방법
- 경기도는 불합리한 복지제도로 인해 도민이 피해를 보고 있거나 재정적 부담이 큰 사업에 대한 해결방안을 대선주자들에게 공약으로 제안
- 예를 들면,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시 기본재산공제액 기준 현실화, 전 국민이 입소대상자인 생활시설(거주시설)에 대한 국가보조금 비율 조정 등이 있음

02

사도/사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

1. 경기도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탈락가구 현황

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찬반논의가 다시 점화되고 있어, 지난해 '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' 결과를 토대로 도내 기초생활보장 수급탈락 현황을 비교

-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 2000년 시행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상자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을 중심으로 제도개편을 지속해오고 있음
 - 특히 지난 15년의 경우,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기존의 통합급여 체계를 개별급여 체계로 전면 전환하는 등 제도운영에 큰 변화
- 그러나 아직까지 제도 사각지대 문제는 해소되지 못한 채 비수급 빈곤층이 대규모로 존재
 - 2014년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규모는 약 133만 명이었으며, 같은 시기 비수급 빈곤층은 약 115만 명 규모로 추산*
-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비수급 빈곤층을 대상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주요원인으로 부양의무자 기준과 지나치게 낮은 소득 기준이 거론
 - 첫째, 가족의 부양책임에 대한 의식이 점차 약화됨에도 불구하고 법적기준은 실제 부양여부와 관계없이 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를 법적 부양의무자로 규정
 - 둘째, 비현실적으로 낮은 소득·재산기준이 비수급 빈곤층의 수급을 제한하는 기제로 작용
- 실제 지난 해 경기복지재단 실태조사에 따르면, 급여신청 후 탈락한 가구의 47.1%는 소득 및 재산기준, 30.9%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탈락
 - 2015년 한 해 동안 도내 약 12만 5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했다 탈락
 - 탈락가구 중 47.1%(약 5만 8천 가구)는 소득 및 재산의 기준 초과, 30.9%(3만 9천 가구)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의 기준이 초과되어 탈락한 것으로 조사

*한국보건사회연구원, 『2014 복지욕구 실태조사』

〈표〉 도내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탈락가구의 탈락사유별 현황 (2015)

	수급가구	비수급가구	신청탈락가구의 탈락사유별 분포						
			소 계	소득	자동차	부동산	금융재산	부양의무자	잘 모름
경기도	160,354	4,636,431	124,811	27,266	7,311	18,339	5,867	35,891	27,439
(비율)	-	-	(100)	(21.8)	(5.9)	(14.7)	(4.7)	(30.9)	(22.0)

(단위: 가구)

- 또한 실태조사 결과, 신청탈락가구 중 58.5%(7만 3천 가구)가 탈락 후 생계를 "이전보다 덜 쓰며 생활"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어, 신청탈락가구와 수급가구 간 역진성 문제도 우려
- 보건복지정보개발원(2014)의 연구***에 따르면, 신청탈락가구의 83.6%는 소득인정액이 50만 원 미만이며, 부양의무자의 46%가 저소득층인 등 탈락가구의 생활실태는 매우 열악
 - 신청탈락가구의 83.6%가 소득인정액 산정결과 50만 원 미만으로 나타났고, 탈락가구 부양의무자 46% 또한 그 자신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것으로 분석
- 도내 빈곤가구의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려는 개선 노력 지속 필요

**행복을 자료를 토대로 탈락가구 현황을 분석

2. 재단 주요행사 안내

행사명	주요내용
SIB방식 「해불프로젝트」 사업선포 행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일 시 : 2. 24.(금) 15:30~ • 장 소 :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16층 • 내 용 : 해불프로젝트 사업추진 경과보고 및 사업개시 선포식 • 참 석 : 운영기관 및 수행기관, 민간투자자 등 30명 내외

03

FACT CHECK

정신보건법 전부 개정, 초점은 '관리' vs. '인권'

- 현행 정신보건법을 전부 개정된 「정신건강복지법」이 오는 5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
 - 개정 법률에는 현행 정신보건법 상의 정신질환자 범위가 중증 정신질환자로 축소*되었으며, 정신건강 증진의 대상을 '전 국민'으로 명시한 조항 신설
 - 또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서비스를 기존의 의료 중심에서 복지영역으로 확대
- 개정법에는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과 장기입원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당사자 인권이 강화되었다는 평가
 - 기존에는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와 의사 1명의 소견으로 강제입원이 가능하였으나, 개정법에서는 계속입원에 대해 정신질환자 본인 또는 후견인의 동의와 의사 2명 이상의 소견일치가 필요
 - 또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강제입원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가 강화
- 그러나, 정신의료계는 "국내 의료 및 정신보건복지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입원절차 등 행정적 규제만 강화하였다"며 비판**
 - 입원판정을 위한 진단의사 지정, 입원적합성 심사 등으로 무려 한 달의 기간이 소요되며, 그 사이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 발생을 우려
- 개정법이 인권보장 강화와 지역사회 통합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,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와 재활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우선되어야 함
 - 국내 중증 정신질환자 약 50만 명(추정치***) 중 28만 명이 의료기관 입퇴원을 반복하고, 지역사회에서 보호받는 규모는 9.6만 명에 불과(14년 기준)한 현 시점에서,
 - 병원에서 '밀려나는'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지역사회 내 정신보건복지 인력 및 시설이 충분하기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진정한 인권보장 및 지역사회 통합 가능

*"독립적으로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"으로 한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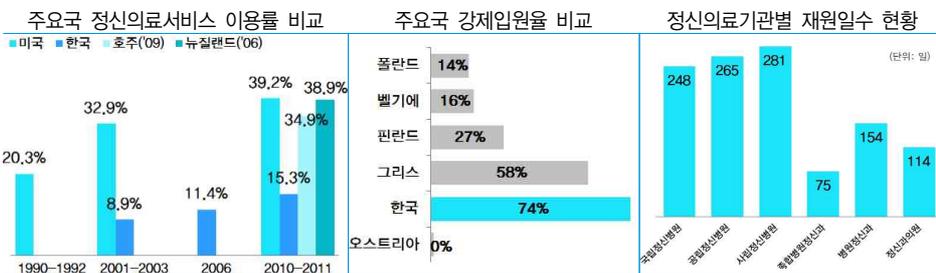
**정년의사 (2017.2.7.), "법은 조기퇴원 가능하게 하라지만 정작 제도는 뒷받침 못해"

***National Foundation for Brain Research

04

통계로 보는 복지

우리나라 정신질환자 실태



자료 :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(좌), 서울시 정신보건통계 홈페이지(가운데, 우)

-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*결과에 따르면, 우리나라의 정신의료서비스 이용률은 2011년 기준 15.3%로 2006년(11.4%)에 비해 증가
 - 2000년대 초반 8.9%에서 06년 11.4%, 11년 15.3% 등 미국과 더불어 정신의료서비스 이용률이 점차 증가하는 국가에 속하지만, 서비스 이용률 자체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
-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율(75%), 그리고 재원일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남
 - 전체 입원 중 강제입원의 비중이 폴란드 14%, 벨기에 16%, 핀란드 27%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강제입원비율은 74%로 압도적 비중
 - 또한 정신의료기관의 평균 입원일수도 197일로 OECD국가에 비하여 장기입원 경향이 강함**

*정신질환 실태조사는 정신보건법 제9조 약 근거 5년마다 실시

**정신건강 종합대책 (2016.2.25.)

05

해외동향

공공부조 수급요건으로서의 부양의무자 기준

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공약이 발표되어, 해외 주요국의 공공부조제도의 수급요건,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살펴보고자 함

- 유럽 주요 국가들의 가족부양의무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
 - 보편주의적 복지국가를 갖춘 스웨덴,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가족부양의무가 최소라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고 영국, 독일 등은 부양의무자 범위를 핵가족으로 제한
 - 그리스, 이탈리아,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의 경우 부양의무에 확대가족을 포함

〈표〉 가족부양의무 유형

해당 국가	가족부양의무 유형
스웨덴, 핀란드, 노르웨이 등	· 가족의 부양의무 최소(minimal), 부양의 주된 책임은 국가*
영국, 아일랜드, 독일, 프랑스, 벨기에, 오스트리아, 네덜란드 등	· 부양의무가 핵가족(nuclear family)으로 국한된 국가 · 부모의 자녀 부양 의무만을 부과(영국, 아일랜드) · 성인자녀의 부모 부양의무를 포함(독일, 프랑스, 벨기에 등)
그리스, 이탈리아, 스페인, 포르투갈 등	· 부양의무가 확대가족(extended family)에까지 확장 · 형제자매, 조부모, 삼촌 등의 친족이 부양의무 관계에 포함

자료 : Millar, J., & Andrea, W. (2007). 「Family Obligations in Europe」 에서 재구성

*국가급여가 개인(individual)을 대상으로 하며 부부는 단일한 급여단위로 간주

- 주요 선진국에서는 부양의무자가 공공부조제도 수급의 절대적인 요건이 되는 경우가 드뭄
 - 대표적 사례로 미국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소득과 재산 기준에 근거한 자산 조사가 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됨
 - 북유럽 복지국가에서도 부양의무자 유무가 공공부조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요소는 아님
 -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국가의 경우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수급의 장애물이 되지 않으며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부부와 미혼자녀로 국한

〈표〉 주요국의 공공부조 형태 및 수급요건 비교

국가명	공공부조 형태	수급요건
스웨덴	· 국가 기준에 근거한 경제적 지원 · 특별사유 발생 시 생계 및 의료서비스 지원	· 일반적 사회보장제도의 무혜택자 · 스웨덴 거주자
프랑스	· 생계, 주거, 의료급여 지급	· 수당 종류에 따라 대상과 소득기준 상이
영국	· 소득지원(Income Support) · 구직자수당(Income-based Jobseeker's Allowance) 지급	· 저소득자 중 자산조사 후 급여 지급
미국	· 빈곤가구를 위한 한시 부조 프로그램(TANF) · 빈곤 노인 및 장애인에게 현금 지급(SSI) 등**	·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· 소득 및 재산기준에 근거한 자산조사 실시
일본	· 생활보조제도(빈곤층에 생활부조 외 주택, 교육, 의료부조 등의 급여를 포괄적으로 지급)	취약계층 및 근로능력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순순위로 고려

자료 : 국회입법조사처(2010). 「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」 에서 재구성

**이밖에 저소득층 현금 지원 프로그램(ETC), 보충 영양지원 제도(SNAP),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의료 보조 제도(Medicaid) 등이 공공부조에 해당함

- 한국과 유사한 공적부조제도를 가진 일본에서도 공공부조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
 - 구 생활보조제도에서는 부양의무자 유무가 우선 고려 사항이었으나 현 생활보조제도에서는 수급 요건이 아닌 단순순위로 고려
- 주요국에서는 사적 부양의 의무를 강제하는 부양의무자 범위 기준이 없거나 핵가족 중심으로 부부와 미혼자녀에 대해서만 부양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
 - 부양의무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공공부조의 수급요건이 아닌 부양의 단순순위로 간주하고 있음
 - 특히 일본의 현행 생활보조제도는 부양의무기준 논란을 겪고 있는 한국이 참고할 만한 사례임